

# 17世紀 中葉 中國人의 濟州 漂到

- 顯宗 8年(1667)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 -

강 창 룡\*

〈차 례〉

- I. 머리말
- II.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到와 身元 및 貨物
  - 1.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到
  - 2.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身元과 貨物
- III.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送還 處理와 中國人의 漂到 處理
  - 1. 大明義理論과 實利主義
  - 2. 中國人의 漂到 處理
- IV. 맺음말

## I. 머리말

청나라의 조선왕조에 대한 압박은 인조와 효종 대에 비해 현종 대(1660~1674년)에 많이 약화되었다. 청나라 조정은 조선왕조가 바쳐야 할 방물 등을 감면해주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이미 청나라 조정은 중국 남방의 농업 중심지를 장악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였다. 현종 5년(1664) 당시 청나라의 역관들은 조선왕조의 군사적 동향을 비롯하여 모르는 國事 기밀이 없었다. 심지어 조선왕조의 신료들이 어떤 당색에 속해 있는 것까지 훤히 알고 있어서 수 치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비해 조선왕조는 청나라 조정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조선왕조가 청나라 조정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조선후기 사회사(전공)

는 근거로는 북경으로의 使行, 조선왕조로 도주 해 온 走回人<sup>1)</sup>들의 見聞, 간혹 표류해 온 漢人들의 전해주는 소식 등이 고작이었다. 이는 바로 정보원에 따라 신빙성의 편차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정보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 이러한 가운데 청나라 조정의 고민은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청나라 조정에 저항하는 鄭成功의 세력과 漢人 藩王 등을 처리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sup>2)</sup>

한편, 1644년에 明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임시로 따로 정해진 수도 南京에서는 神宗의 손자인 福王을 황제로 추대하여 弘光이라 개원하고 정권을 수립한 것이 남경정권이었다. 하지만 이 남경 정권은 1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또 1646년에 명나라 太祖의 9대손인 離海를 받들고 福建의 紹興에서 監國을 세우고 연호를 隆武라 하였다. 이 복건 정권도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1년 2개월 밖에 유지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646년에 복왕의 從弟인 桂王이 廣東의 肇慶에서 자립하고 연호를 永曆이라고 하였다. 이 세력이 한 때에는 雲南·貴州·廣東·廣西·湖南·江西·四川 등지에 미쳤다. 1646년 12월에 정성공이 이끄는 江蘇·浙江·福建과 海上인 동남 전선에서 南明 군대와 청나라 군대는 전투를 벌였다. 정성공은 복건 연안에서 병사를 일으켜 廈門島 등을 근거지로 삼고 각지로 출격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1649년에 남명 정권은 정성공에게 황실의 성인 朱姓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성공을 國姓爺라 불렀다. 1661년에 정성공은 네덜란드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臺灣을 공략하여 근거지로 삼았다. 정성공이 廈門島 등을 거점으로 계속 청나라 조정에 저항 활동을 벌이자 청나라 조정은 1661년에 遷界令을 내려 해안의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1662년에 정성공의 죽음으로 인해 정성공의 동생인 鄭襲과 그의 아들인 鄭經 사이에 권력다툼이 벌어졌다. 정경은 명나라의 永曆 年號를 그대로 이어 받고 대륙의 청나라 조정에 저항을 지속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청나라 조정에서는 1662년 정습과 정경이 권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정씨 세력의 약화된 틈에 廈門島를 점령하여 1663년부터 1677년까지 수 차례 사람을 보내 정경에게 귀순을 권유하였다.

- 1) 走回人은 적에게 사로 잡혔다가 몰래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일컫는다. 곧 청나라 군 사에게 잡혔다가 몰래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 2) 한명기, 2003, 9,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당시의 朝清,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하멜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LG연암문고, 8~25쪽.
- 3) 傅樂成, 1985, 「臺灣의 平服」 『中國通史』, 大中國圖書公司印行, 655~657쪽.

그러나 정성공·정경의父子가 청나라의 조정에 비교적 오래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남태평양 방면과 무역을 행하여 경제적 기초를 가졌기 때문이다. 정씨 가문이라는 해양 세력의 존재는 조선왕조와 청나라 조정의 관계가 긴장되는 마지막 고비였다. 정경의 존재 때문에 조선에 표착한 漢人의 선박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청나라 조정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정성공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보다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해안 주민과 정성공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1660년, 1662년, 1663년, 1664년 계속해서 遷界令을 실시했던 것이다. 천계령은 해안으로부터 山東省 40리, 福建省까지 30리, 廣東省까지 50리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비워버리는 조치<sup>4)</sup>였다. 1681년까지 지속된 천계령의 조치로 말미암아 해안지역의 대규모 옥토가 황폐화되어 경지면적이 대폭 감소되었다. 더구나 어업과 製鹽業이 정체 상태에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 조성되었던 소도시들도 파괴되었다.<sup>5)</sup>

그 동안, 仁祖·孝宗 朝에 네덜란드인의 조선 표착과 韓·中·日의 외교 관계<sup>6)</sup> 및 朝·日·蘭 국제관계사 연구<sup>7)</sup>, 조선 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sup>8)</sup>, 표류민 송환체제<sup>9)</sup>, 조선과 일본의 표류·표착의 지역적 특성<sup>10)</sup>과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 
- 4) 청나라 조정의 적극적인 토벌 활동과 遷界 조치로 말미암아 康熙 4년(1665) 봄 이후에 福建 沿海는 대체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나라 조정은 臺灣 정벌보다는 沿海의 천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鄭經에 대한 招撫, 투항자의 재배치, 군대와 행정의 재조정 등 몇 가지 조치와 더불어 천계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정씨 세력을 축출한 후 강희 5년(1666) 정월에 總督 李率泰는 수년이래 海禁이 매우 엄하여 遷界之民은 모두 옛 직업을 잃고 있으니 한계를 마땅히 대략 완화하여 농사짓고 고기잡이를 하도록 도와 백성들이 조금 소생토록 해 달라고 했다. 元廷植, 2003, 『清初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東洋史學研究』 第81輯, 東洋史學研究會, 70쪽.
  - 5) 任桂淳, 2000,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淸史』, 신서원, 71~75쪽.
  - 6) 金良善, 1967, 『仁·孝 兩朝 蘭人의 漂到와 韓·日·中 三國의 外交關係』 『鄉土서울』 30.
  - 7) 申東珪, 1999, 『네덜란드인 朝鮮漂着에 관한 再考察-漂着船·漂着地·漂着年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8·59.
  - 申東珪, 2001, 『近世 朝·日·蘭 國際 關係史 研究』, 日本立敎大學 博士學位論文.
  - 申東珪, 2001, 『네덜란드인의 日本行 '도주사건' 과 德川幕府의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제14집.
  - 8) 李薰, 2000,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 9) 李薰, 2000, 『조선후기 표류민 송환체제와 대일본관계』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 10) 정성일, 2001, 『표류·표착의 지역적 특성과 그 현재적 의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

교류<sup>11)</sup>·일본 민중의 조선 인식<sup>12)</sup>, 조선후기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sup>13)</sup>, 조선과 일본의 근세 표류민의 송환유형과 국제관계<sup>14)</sup>을 중심으로 한 선행의 연구가 있다. 이 선행의 연구들은 조선과 일본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7세기에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표류민의 송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진전이 없었다. 앞서 反淸 漢人들의 제주 표착에 관한 선행의 연구가 있었다. 이 선행의 연구에는 구체적으로 표류한 장소와 표류한 사람과 이름, 직책 등을 밝힌 바 없이 대강의 내용으로만 표류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sup>15)</sup> 이를테면 맨 처음에 표류한 장소, 표류해 온 사람의 직분·성명·나이·본적, 표류해 온 사람의 화물, 표류해 온 사람들의 송환 처리안과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중국인의 漂到 처리 등등에 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 글에서는 현종 8년(1667)에 명나라 상인 임인관 一行의 맨 처음 표류 지점, 표류해 온 사람의 직분·성명·나이·본적, 표류해 온 사람의 화물, 표류해 온 사람들의 송환 처리안과 현종 8년 이전 및 이후에 있었던 중국인의 표도 처리에 해당 지역 수령의 대응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到와 身元 및 貨物

### 1.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到

현종 8년(1667) 5월 25일에 大靜縣 狹來里 浦의 座主人 金耽仁이 관가에 사실의

구, 한일관계사학회, 국학자료원.

- 11) 민덕기, 2001,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한일관계사학회, 국학자료원.
- 12) 池內 敏, 2001, 「近世 日本 民衆의 朝鮮 認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한일관계사학회, 국학자료원.
- 13) 鄭成一, 2002, 「漂流記錄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 『漂人領來騰錄』과 「漂民披仰上帳」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第99輯, 國史編纂委員會.
- 14) 신동규,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 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 유형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18合輯.
- 15) 金泰能, 1970, 「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 『제주신문』 2월 26일(9회 연재)  
 金泰能 1982, 「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 『濟州島史論攷』, 세기문화사, 384~399쪽.  
 金泰能 1969, 「旌義縣에 反淸漢商의 漂着과 그들에 대한 我國의 措置」, 『南濟州』 통권 8호.

정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5월 25일에 靺來浦口 동쪽 개각에 외국의 배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도착한 것을 보았다. 이곳에는 약 90여 사람들이 바닷가 일대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배가 떠다니며 부서지고 깨어져 있었다.<sup>16)</sup> 김탐인의 사실 정황에 대해 보고한 것을 접한 大靜縣監 安塾<sup>17)</sup>은 표류하여 도착한 90여 사람들을 外賊으로 인식하여 군사를 보내어 꼭 붙잡을 것을 제주목사 洪宇亮<sup>18)</sup>에게 급하게 알렸다.<sup>19)</sup>

한편, 제주목사 홍우량은 濟州判官 崔鎮南<sup>20)</sup>을 임명하여 먼저 대정현 예래리 개각으로 가서 대정현감 안숙과 함께 사정을 세세히 물어 보는 일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6월 초 9일 경에 제주목사 홍우량은 안숙 대정현감이 90여 사람들의 표류해 온 장소에서 보고 확인한 사실을 첨부하여 중앙 조정에 치계하였다.<sup>21)</sup>

더구나 제주판관 최진남은 제주목사가 마련한 절차에 의거하여 문서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의 명령에 따랐다. 특히 제주 판관 최진남은 통역하는 사람인 李德山에게 자세히 들어 조사하게 했다. 李德山의 통역에 의하면, '대정현 예래리에 표도 했던 95명은 본래 명나라 福建省 지방 주민으로 일본에 가서 장사하는 길이었다. 명나라 복건성 지방 주민 95명은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들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颶風<sup>22)</sup>을 만나 장차 배가 깨뜨려져서 그들의 몸과 화물은 모두

- 16) 大靜縣監安塾呈 本縣靺來里浦座主金耽仁進告 該本年五月二十五日 浦口東邊崎頭去處 見具樣船隻 遭風漂到 約九十餘生口 在岸等因卑職劃 即向前識認委的 商人漂泊破敗等情 具呈得此着差。「馳報漢人林寅觀等漂來事情咨文」『丁未傳信錄』.
- 17) 大靜縣監 安塾은 顯宗 8년(1667) 4월에 특旨로 임명되어 到任하여 7월에 조사하여 처리할 때 大臣으로부터 임금께 의견을 아뢰어서 대정현감의 직무에서 遷任이 허락되었다.
- 18) 濟州牧使 洪宇亮은 顯宗 6년(1665) 11월에 도입(到任)하여 동·서·남 城門을 고쳐지었을 뿐만 아니라 北水口의 虹門을 수리하였다. 현종 8년(1667) 6월에 遷任되었다. 특히 “홍우량은 제주판관·제주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그를 清白吏라고 칭송하였다.” 李增, 『南樣日錄』, 『耽羅志-名宦』(영인본), 2001. 특히 그 당시의 제주목사 홍우량은 다른 임지로 옮기는 발령을 받고 있었다.
- 19) 當初漂到時 大靜縣監安塾 認爲外賊 發兵捕捉 報知濟伯洪宇亮 忌啓朝廷 終有送北之舉 國人皆曰洪安兩人 將必有殃也 未出數年 兩人俱沒 天之報施 可謂嚴矣. 『丁未傳信錄』, 「漂人投詩-註中」.
- 20) 濟州判官 崔鎮南은 顯宗 6년(1665) 6월에 到任하여 현종 8년(1667) 8월 遷任하였다.
- 21) 八月初四日 招庶弟培來 口號洪執政命夏前長書 書曰 於六月初九日 紅到梨津前洋逢着 舊牧馳啓 乃漢紅漂泊本州事也 鄙意以爲此等事 既已啓知 則聽聞甚煩 况漢紅與日本南蠻 之紅有異 先漏彼中 必未終難處之事 故深歎舊牧之不能周祥 於其間則已無及矣. 「漂人問答」 『丁未傳信錄』.
- 22) 중국에서는 옛날에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고 바람 방향이 선회하는 風系를 ‘颶風’이라고 했으며, 이 ‘颶’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뜻이다.

다 물 속에 가라앉았다. 명나라 복건성 지방 주민 95명은 하늘이 준 행운으로 물에 빠지는 것을 면해서 살아나게 되었다<sup>23)</sup>라고 말하였다.<sup>24)</sup> 바꾸어 말하면,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大明國 福建省 관가의 상인인 林寅觀 一行이 한 배에 함께 탔다가 대정현 예래리 개각[浦尾]<sup>25)</sup> 바닷가 일대에 배가 파괴되었다.<sup>26)</sup>

大明國 福建省의 官商인 임인관·曾勝·陳得 등은 파선하게 된 사정의 전말에 관한 일을 글로 알렸다. 이 글에 의하면, “임인관 일행은 배에다 흰 빛깔의 사탕·사슴 가죽·약재로 쓰는 다목의 속살·품질이 좋은 비단·약재 등의 물품을 싣고서 일본국에 가서 장사하고자 하여 5월 11일에 대만[東寧]<sup>27)</sup>에서 출항했다. 23일 밤에 이르러 회오리바람이 사납게 일어나자 거센 바람을 피하다가 속칭 ‘시리돌’[磯]<sup>28)</sup>에 부딪혀 선반은 여러 조각으로 깨졌다. 뿐만 아니라 임인관·증승·진득 일행은 복건성에 있는 부모, 아내와 아이들의 굶주림을 호소하면서 약간 물품을 제주 판관 최진남·대정현감 안숙에게 바쳤다. 이는 바로 임인관·증승·진득 등이 그들을 따르는 인원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인관·증승·진득 등은 제주 판관 최진남·대정현감 안숙에게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으로 우리들의 사정을 가련하게 여겨서 배를 보내어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

23) 令譯人李德山審問 得說稱俺等 俱係福建省地方住民 往販日本 生理在海 猝遇風颶 將船打破 隨身貨物 幾盡沈水 原來坐船人九十五名 適有天幸得脫 泅死。『馳報漢人林寅觀等漂來事情咨文』 『丁未傳信錄』。

24) 『馳報漢人林寅觀等漂來事情咨文』(1667年 9月 26日) 『丁未傳信錄』。

25) 개각[浦尾]의 ‘개[浦]’는 달의引力에 의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海面의 수 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이루는 바닷물의 드나드는 곳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개각의 ‘각[尾]’은 ‘끝’ 또는 ‘꼬리’를 뜻하는 濟州語이다. 따라서 개각은 ‘개’의 ‘끝’을 뜻한다.

26) 顯宗丁未 五月二十四日 大明福建省 官商林寅觀等 九十五人 同乘一船 致敗于大靜縣硯來里浦尾沿邊 李益泰, 『知瀛錄』。

27) 東寧은 현재 臺灣을 지칭한다. 특히 順治 18년(1661) 4월에 鄭成功은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대만을 공격하여 옹거하였다. 동녕은 鄭成功이 대만을 지배할 때에 부르던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東都라 하기도 한다. 더욱이 동녕과 沿海 地域에서 주로 활동하는 상인들은 泉州府와 漳州府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상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해상 무역에 투신하였기에 무역의 번성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 범위도 넓어졌다. 松竹秀雄, 1990, 『 타이완(臺灣)을めぐ는17世紀の海外貿易』 『東南アジア研究年報』 31輯, 60~61쪽.

28) 磯는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이나 해변 가까이 있는 바위로서 조수의 간만에 따라 물위에 나타났다 잠겼다하는 것이다. 제주도 연안 해안에는 돌이 많아서 ‘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구는 이로 말미암아 선박의 출입이 어려우며 풍파가 심할 때에는 선박의 좌초가 많다. 박용후, 1992, 『제주도 땅 이름 연구』, 제주문화, 122~123쪽.

청했다. 특히 임인관 등은 '일본국 나가사끼[籠仔沙箕]에 도착해 長崎王을 만나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本國으로 돌아갈 수 있다'<sup>29)</sup>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종 7년(1666) 8월 6일(음력, 9월 4일-양력) 하멜 일행 8명은 탈출을 감행하여 8월 8일(9월 6일)에 일본의 고토[五島]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하였다. 하멜 일행 8명의 탈출에 관한 보고는 그들을 몇 군데에 나누어 두고 있던 관할 지방 관청의 보고가 아닌 差倭<sup>30)</sup>로부터 알려지자 중앙 조정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東萊府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중앙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 8명이 일본의 고토에 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 관리로부터 보고가 없었다. 이리하여 중앙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 8명의 도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처리할 것을 진언했다.<sup>31)</sup> 특히 현종 7년(1666) 8·9월에 중앙 조정에서는 관할 지방에 재임하고 있던 관리들이 하멜 일행 8명의 도주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였다. 이를테면 鄭諤이 현종 7년(1666) 4월 20일부로 全羅左水使에 임명되었지만 하멜 일행 8명의 도주한 사건을 책임지고 파면되었다.<sup>32)</sup> 더구나 순천의 경우에도 順天府使가 중앙 조정에 하멜 일행 8명의 탈출한 보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처벌된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전례로 말미암아 大靜縣監 安塾은 90여 사람들의 표류해 온 장소에서 보고 확인한 사실을 침부하여 牒報로 濟州牧使 洪宇亮에게 馳報를 하였다. 이 치보를 접한 제주목사 홍우량은 全羅監司 洪處厚<sup>33)</sup>에게 첩보로 급히 보고했다. 그

29) 顯宗丁未 五月二十四日 大明福建省 官商林寅觀等 九十五人 同乘一船 致敗于大靜縣稅來里浦尾沿邊 而林寅觀等呈書曰 大明國福建省 官商林寅觀曾勝陳得爲溼陳 敗船情未事寅本船裝載白糖鹿皮蘇木綢緞藥材等 貨欲往販日本國 於五月十一日 在東寧開駕 至升三夜 洋中颶風狂作 本船飄逸 貴國箇嶼閣碎 所載貨物 悉爲風浪飄擊 百無一存 并護船牌文俱溺水 僅拯起有些少 鹿皮蘇木綢緞藥材甘草等 俱所計無幾 茲寅等 家後父母懸望 妻兒號饑 日夜思鄉 涕泣橫集 願將此各項些少貨物 謹奉上官 發稿從員 伏望上官 開天地好生之德 俯憐下情 遣船渡載 寅等到日本國 籠仔沙箕 見長岐王 講料造船 得還本國 不特歸見父母妻兒 國家感戴 而外國聞 風欽服無疆矣 李益泰, 『知溫錄』.

30) 差倭는 조선 시대에, 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使臣이다. 사신에는 大差倭, 別差倭, 裁判差倭 따위가 있었다.

31) 『承政院日記』 顯宗 7年(1666) 10月 辛未條.

32) 備邊司가 아뢰기를, "엇그저게 全羅監司의 狀啓로 인해 전라도에 나누어 둔 南蠻人이 도망쳐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전라도에 공문을 보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더니, 좌수영에 나누어 둔 남만인이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좌수사 鄭諤을 拿問하여 죄를 주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顯宗修改實錄』 16卷, 7年 11月 壬寅條.

33) 洪處厚는 인조 11년(1633)에 正言으로 있으면서 崔鳴吉을 탄핵하다가 체천현감으로 좌천되었다. 현종 6년(1665)에 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리하여 현종 8년(1667) 6월 21일에 전라 감사 홍처후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앙 조정에 치계를 했다. 중앙 조정에서는 임금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과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논의했다.<sup>34)</sup> 6월 21일에 전라 감사 홍처후가 중앙 조정에 치계한 이틀 후 6월 23일에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중앙 조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증승·진득 등 90명을 끝내 北京에 압송하는 것으로 의논을 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목사 홍우량은 사유를 갖추어 글로 임금께 상주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증승·진득 등 90명과 짐·물건 등을 3척의 배에 나누어 海南都會官으로 떠나보내어 차차 올라가게 하였다.<sup>35)</sup> 더구나 명나라 복건성의 관가의 상인 임인관 일행은 5월 23일에 대정현 예래리 개각 일대에 표류하여 도착해서 9월 초 4일에 제주에서 배를 출발할 때까지 약 100일 동안에 제주목에 머무르고 있었다.

## 2. 명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身元과 貨物

명나라 때에 천주부와 장주부 지역은 福建省 중에서도 토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천주부와 장주부 지역에는 항상 食糧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입쌀·콩·보리 등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천주부와 장주부 지역에서는 명주·섬유·솜·솜옷 등 의류도 수입을 했다. 이와 같이 천주부나 장주부 지역의 주민들은 식량과 의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해상 무역이나 상품 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sup>36)</sup> 이처럼 임인관 일행은 식량과 의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대만에서 일본으로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에 주력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임인관 일행은 제주에 표도하게 되었다.

한편, 현종 8년(1667) 당시에 안숙 대정현감과 제주판관 최진남이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에게 그 사정을 묻는[問情] 일을 한 후에 작성한 임인관 일행의 직분·성명·연세·본적, 곧 身元을 나열하면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직분과 성명, 연세·본적의

34) 『顯宗實錄』 14卷, 8年 6月 甲午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乙未條.

35) 疊其卜物 分載三船 出送海南都會官 次次上去, 李益泰, 『知瀛錄』.

36) 元廷植, 1997, 9, 『明末清 中期 閩南의 市場과 宗族』 『歷史學報』 第155輯, 歷史學會, 85~118쪽.

목록에 의하면,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직분은 官商·財富·官船官·家丁·總管·夥長·船工·木梢 등 다양하였다. 무리 姓氏를 보면 林氏 25명, 陳氏 20명, 鄭氏 4명, 曾氏 4명, 蔡氏 4명, 郭氏 3명, 吳氏 3명, 揚氏 2명, 張氏 2명, 기타 성씨로는 奚·高·歐·德·文·尾·未·潘·方·三·宋·崇·勝·施·呂·易·迎·王·李·引·載·占·池·泉·湯·許·洪·黃씨가 각 1명이 있었다.

더욱이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나이는 18세부터 50세까지였다. 더구나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본적은 대다수가 泉州府·漳州府 출신이다. 천주부에는 同安縣·晉江縣·南安縣 사람과 천주부 사람이다. 더욱이 장주부에는 漳泰縣 사람과 장주부 사람<sup>37)</sup>이다. 특히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은 본래 천주부와 장주부의 사람으로 청나라의 침입을 받자 東寧으로 피해 들어간 사람들이다.<sup>38)</sup>

또한,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배에 실린 원래의 화물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배에 실린 원래의 화물

貨物	數量	貨物	數量
白糖·冰糖	合計 20만 斤	縐紗	公私 합계 210匹
鹿皮	大中小 합계 1만 6천 張	花紬	240 匹
蘇木	5천 斤	錦緞	17 匹
藥材	합계 4천여 斤	氈單	35 領
胡椒	10근 곧 1천 斤	食鼎	원래 3구가 있었으나 현재 1구만 있음

자료 : 李益泰, 1997, 『知瀛錄』, 『漂漢人記』, 134~140쪽

37) 元廷植, 「明末~清 中期 閩南의 市場과 宗族」의 [표1]에 明清時代 閩南의 市場數 變化에 의하면, 泉州府에서는 隆慶·萬曆 年間に 시장 수는 同安縣의 7개, 晉江縣의 8개, 南安縣의 4개였다. 그러다가 康熙 初에 시장 수는 동안현의 6개, 진강현의 8개, 남안현의 12개였다. 이를테면 강희 초에 동안현의 시장 수는 1개가 축소되었으며 진강현은 그대로이고 남안현은 8개로 증가하였다. 또 漳州府에서는 용경·만력 年間に 시장 수는 漳泰縣의 1개였다가 강희 초에 4개로 3개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천주부와 장주부에서 시장수의 증가는 상품경제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천주부와 장주부 지역의 주민들은 식량과 의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해상무역이나 상품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元廷植, 1997, 9, 「明末~清 中期 閩南의 市場과 宗族」 『歷史學報』 第155輯, 歷史學會, 89~92쪽.

38) 『顯宗實錄』 14卷, 8年 10月 甲戌條·『顯宗修改實錄』 18卷, 8年 10月 甲戌條.

〈표 1〉에 의하면,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이 본래 배에 실은 바의 물품으로는 흰 빛깔의 사탕·얼음사탕<sup>39)</sup>·사슴 가죽·약재로 쓰는·다목의 붉은 속살·약재·후추·명주실로 짠 피륙·꽃 모양의 명주·비단·솜털로 만든 모직물<sup>40)</sup>·밭솔 등이다. 이를테면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이 본래 배에 실은 바의 물품은 모두 바람과 물결로 인해 백에 하나도 없었다. 배에 글자를 써서 게시한 나뭇조각은 물에 빠졌으나 건져들어 올린 것이 약간 있었다. 간혹 있는 것은 사슴 가죽·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비단·약재·콩과에 속하는 다면초<sup>41)</sup> 등이다.

또한, 홍우량 제주목사 때에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소지한 물건 중에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 등을 책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은 제각각 몸을 풀어 주어서 돌아 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sup>42)</sup> 홍우량 제주목사가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물품과 재화의 낱낱이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임인관 일행의 물품과 재화의 수

貨物	數量
백색 주름이 잡힌 비단	201匹, 1필 10자 8치, 1필 10자 5치, 1필 紅色
흰 꽃무늬를 넣어 짠 명주	240匹
비단	17匹
남빛 꽃 모양의 명주	2同
共長	32자 9치
절단한 고운 명주	5端 內, 白色 1端 길이 6자, 백색 1단 4자, 粉紅色 1단 길이 5자 3치, 분홍 1단 5자 3치, 홍색 1단 5자 8치

39) 천주부와 장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의 생산이었다. 그리하여 천주부와 장주부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는 설탕[黑糖·白糖], 荔枝·龍眼肉(龍眼)·橘 등이었다. 元廷植, 1997, 9, 「明末~清 中期 閩南의 市場과 宗族」 『歷史學報』 第155輯, 歷史學會, 85~118쪽.

40) 천주부와 장주부에서 생산된 수공업품 가운데 전국적으로 팔리는 것으로는 가벼운 비단과 명주실로 저칠게 짠 깎·코끼리의 어금니 등 수입 가공품이나 배[布] 가운데 細白布·췌 섬유로 짠 베·水沙布이다. 특히 비단은 고급 상품으로 內需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많이 생산되었다. 천주부와 장주부에서는 설탕 이외에 췌 섬유로 짠 베·수사포·종이·자기·담배·모시·감굴·荔枝·용안육 등은 중요한 수출품이다. 元廷植, 1997, 9, 「明末~清 中期 閩南의 市場과 宗族」 『歷史學報』 第155輯, 歷史學會, 85~118쪽.

41) 주 29) 참조.

42) 蓋欲以舊伯時 成冊貨物 各自贖身以歸. 「漂人問答」 『丁未傳信錄』.

17世紀 中葉 中國人의 濟州 漂到

貨物	數量
紅氈新破共	35領
주사(朱砂)	1포대, 무게 1근 8량
용뇌먹	2자루
다목의 붉은 속살	共 120가지, 무게 1470근
후추	43말[斗]
이은 자루	共 무게 207근 줌
內桂	50근
감초	共 590근
바곳	共 298개
尾縑	무게 10근 8량
걸에 걸쳐놓은 상자	17개, 흔들려서 떨어졌다.
물건을 담은 손 그릇	9개
가는 쇠나무	1개, 대개 없다.
벼룻집	1개, 벼룻돌이 없다.
各其所里	2
용천 그릇	1枚(塊)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징	1
꽃 보시기	1
나무잔대	1
掛箱鑰開鐵	4
붉게 간 그릇	1
우산	6
쇠술	1
낫쇠를 걸쳐놓은 저울틀	1
검푸른 상자	1
도끼	4자루
쇠들줄	21자루 내, 5자루에는 자루가 없다.
칼	13자루
큰 저울	1개
쌍육(雙六)판	1개
구리 무쇠	1枝
무쇠 약개	4
구리쇠 저울추	大中小 共 3
철 무쇠	1
무쇠약개	1
조총	1자루
환약	16근
옛 환도	2자루
무쇠돌	1
상어 가죽	5領
군센 소의 명주 밧줄	93사리
모시	114근
삶은 사슴 가죽	23領
정련한 구리의 차 다듬잇돌	1개, 대개 없다.
털 사슴 가죽	6,450領
노루 가죽	730領
水鐵碗口	2, 오랫동안 옮겨 놓아두기가 어렵다.

자료 : 著者 未詳, 『解送漂海人口咨文附計開』(1667年 10月 6日) 『丁未傳信錄』.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대정현 예래리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물품인 명주실로 짠 피륙·꽃 모양의 명주·비단 등은 본래 배에 실린 수량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후추는 음식에 맵거나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조미료이었다. 후추가 본래 1천 근이었으나 43말만 남겨 있었다. 더욱이 다목의 붉은 속살은 본래 5천근이었는데 1,470근만 남아 있었다. 더구나 흰 빛깔의 사탕·얼음사탕·사슴 가죽·솜털로 만든 모직물 등은 물에 빠져서 녹아 없어지거나 무거워서 가라앉았기에 남은 것이 없었다. 더욱이 도끼·쇠돌줄·칼·옛 환도·조총·수철완구[홍이포] 등도 남아 있었다. 특히 청나라에서는 임인관 일행이 휴대했던 홍이포 2門을 鳳凰城으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이듬해인 현종 9년(1668) 4월 초8일에 工曹佐郎 韓公俊으로 하여금 北京으로 수송케 했다.<sup>43)</sup>

한편, 효종 3년(1652) 2월 초9일과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명나라 상인들이

〈표 3〉 「표한인기」 『지영록』의 문정기에 나타난 중국인의 표도

문정항목	책 이름	「표한인기」	『지영록』
나라 이름		大明國	대명국
지방 이름		南京 蘇州府 吳縣	福建省
배가 떠난 지방		남경 소주부 오현	東寧
출발일		1652년 2월 초 8일	1667년 5월 11일
출발 목적		상업	상업
표도까지의 과정 및 사유		2월 초8일에 일본 五嶋에서 開船하여 2월 9일 卯時에 大風을 만나 이곳에 도착하여 한 배가 여지없이 결단이 남	5월 11일에 출항했다가 颶風으로 인해 이곳에 도착하여 한 배가 여지없이 결단이 남
표도 날짜		1652년 2월 초 9일	1667년 5월 23일
표도 지방		旌義縣 川尾浦	大靜縣 猓來里 浦尾沿邊
배의 종류		私船	官船
승선 인원		苗珍實 등 213人, 溺死者 185인 · 生存者 28人	林寅觀 등 95인
공문(公文)·조표(照標) 소지 여부		없음	바람을 만났을 때 모두 물에 빠짐
귀국시 필요한 바람		서북풍	필요 없음
소속 지방의 행정		남경 소주부 오현	
배에 실린 물건		狐皮·人蔘·松子·紬絲·錦緞·藥材	白糖·鹿皮·蘇木·綢緞·藥材

자료 : 李益泰, 『知瀛錄』 「漂漢人記」, 125~140쪽.

43) 著者 未嘗, 「搬送漂海人留置紅衣袍咨文」(1668年 4月 초8日) 『丁未傳信錄』.

제주 삼읍에 표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표 3> 『지영록』 「표한인기」<sup>44)</sup>의 문정기<sup>45)</sup>에 나타난 중국인의 표도에 의하여 볼 때에,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도 해 온 선박은 명나라의 선박으로 2건에 2척이다. 표도 해 온 중국 사람은 123명이다.

② 제주에 표도된 사유는 大風<sup>46)</sup>과 颶風<sup>47)</sup>에 의한 것이다. 명나라의 선박은 태풍으로 인하여 2월과 5월에 표도 하였다.

③ 표도한 선박이 정박한 곳으로는 명나라의 배는 정의현 내의 내깍개와 대정현 내의 예래리 깍개 일대이다.

④ 선박의 종류와 선재물을 살펴보면, 명나라의 선박은 개인 소유의 배·관청 소유의 배로 상업용을 목적으로 출항했다. 명나라의 선박에 실려 있던 물건의 종류로는 여우 가죽·인삼·갓·명주실로 짠 피륙·비단·흰 빛깔의 사탕·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약재 등이다.

### Ⅲ. 明나라 商人 林寅觀 一行의 送還 處理와 中國人의 漂到 處理

#### 1. 大明義理論과 實利主義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중국배 1척이 제주에 표류해 와서 배는 조각조각 부

44) 「漂漢人記」는 「知瀛錄」의 부록에 실려 있다. 이 「표한인기」(1652년)의 기록은 중국인의 漂到 관계의 기사다. 특히 「표한인기」와 같이 제목을 붙인 「서양국표인기」 이외에도 청나라 사람의 漂到 관련 기사가 6건이 수록되어 있다. 『지영록』의 부록에는 실려 있는 기사들은 李益泰 濟州牧使가 부임하기 전에 제주목에서 간직하고 있던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의 전례를 적은 여러 기록을 참고로 한 것이다. 李益泰, 『知瀛錄』序.

45) 問情記는 漂到 船舶이 바닷가 근처의 갯가에 정박했을 때 해당 지역 守令은 問情官이 되어 譯學·通事 등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아가 외국인들로부터 배가 와서 정박한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를 상세히 묻고 그 대답한 내용을 조목별로 적어 놓은 것이다.

46) 大風은 큰바람이다. 큰바람은 풍력 계급 가운데 초속 17.2~20.7미터로 부는 바람이다. 태풍에는 나무의 잔가지가 부러질 뿐만 아니라 걷기가 힘들 정도의 세기이다.

47) 颶風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이름은 태풍으로 불린다.

석졌다. 배 안에 싣고 있던 물건은 모두 물에 잠겨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95명이 상륙하니 그들의 입은 옷을 보고 말을 들어 보니 중국 사람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인 임인관 등을 불러 그들의 사는 곳과 표류해 온 사연을 쓰게 했다. 이에 임인관 일행은 명나라 복건성의 관가의 상인으로서 장사하는 일로 일본에 가다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난파당하여 예래리 개각에 표류하여 도착했다. 개각에 표도한 사람들 가운데에 임인관·증승·진득 등 세 사람이 조금 나은 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여 명은 모두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고 있다. 임인관 일행은 청나라에 귀속하지 않고 왜국과 왕래하는 자<sup>48)</sup>였다. 이에 제주목사 홍우량은 전라감사 홍처후에게 중국배 1척이 제주에 표도 했음을 첩보 했다.<sup>49)</sup>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전라감사 홍처후는 현종 8년(1667) 6월 21일에 중앙 조정에게 치계했다. 특히 전라감사 홍처후는 의정부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sup>50)</sup> 그리하여 중앙 조정에서는 임금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논의했다. 6월 21일에 전라 감사 홍처후가 중앙 조정에게 치계한 이틀 후 6월 23일에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처리하는 논의가 중앙 조정에서 이루어졌다. 더구나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을 통해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하는 시기의 중국 사정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명나라의 남은 정권이 사실상 南中國에 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중앙 조정에서 처리하는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종 8년(1667) 6월 23일에 현종은 “지금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右相 鄭致和는 “끝까지 비밀로 하기 어려운 일이니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북경으로 압송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다.”<sup>51)</sup> 또 명나라 때 표류해 온 사람을 혹 사신이 가는 편

48) 『顯宗實錄』 14卷, 8年 6月 甲午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乙未條.

49) 其後顯廟丁未 浙東人林寅觀等 奉永曆皇曆 漂到州境 守臣以聞 朝議欲縛送虜中 太學諸生 上疏斥之.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之一 「濟州-邊情」條.

丁未八年清康熙六年 夏浙江人 林寅觀等 一作陳得會勝 一行九十五人 漂泊大靜 皆華服華語 奉永曆二十一年大統曆 自言東南海上皇帝 猶在我即其人也 牧使洪宇亮 以聞朝議縛送燕京 太學生及閩維重等 俱力爭不得 遣備局郎押去 一說自本島 修葺破船 資給衣糧 運送故國云.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三.

50) 『顯宗實錄』 14卷, 8年 6月 甲午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乙未條.

51) 鄭致和는 현종 8년(1667) 우의정이 되었다. 西人이었으나 온건하여 화를 안 입었다.

에 부쳐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아무리 미세한 일이라도 번번이 질책하니 咨文을 보내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원[齎咨官]을 별도로 정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압송한 뒤에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承旨 閔維重은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북경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은 예수 교도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좋은 방책이다. 청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문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질책을 가한다. 변경에 있는 고을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보낸다면 뒷날 조사하여 심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⁵²)라고 말하였다.

이에 우상 정치화는 "지금 차마 못 보내었다가 일이 누설되어 버린다면 또한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현종은 "나 역시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차마 못할 점은 있다. 후환이 있으면 어찌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吏曹 參判 趙復陽은 "변방 신하가 애당초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곧장 지휘하여 보냈더라면 좋았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⁵³) 知事 柳赫然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여 이미 청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만약 들여보내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간사한 소인들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몰래 일러바쳐서 조사하여 심문하는 일이 있게 될 경우에는 끝까지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게다가 刑曹 判書 李慶億은 "지금 들여보내지 않았다가 뒤에 조사하여 심문하는 일이 있을 경우가 있다. 이때에 청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도망한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질책하지 중국 사람으로 말하지 않을 것"⁵⁴)이라고 아뢰었다. 戶曹 判書 金壽弘은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명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차마 들여보낼 수 없는 것은 민유중의 말과 같다"⁵⁵)고 아뢰었다. 判尹 吳挺一은 "제주에 표류해 온 무리들을 지금 압송한다고 해도 청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52) 閔維重은 仁顯王后의 아버지이다.

53) 趙復陽은 金尙憲의 문인이다. 현종 8년(1667)에 이조참판으로 賑恤廳堂上이 되었다.

54) 李慶億은 효종 2년(1651)에 지방관원의 분란을 조사하기 위한 濟州按察御史로 파견되었다. 효종 10년(1659)에 대사간·충청도 관찰사가 되고 그 후 대사성·도승지·대사헌을 지냈다. 효종 사후 禮訟에서는 宋時烈的 설을 반대한 尹善道를 공격하여 남인과 대립하였다.

55) 金壽弘은 현종 15년(1674)에 제2차 慈懿大妃 복상문제 때, 현종 1년(1660)에 제1차 자의 대비 복상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서인 宋時烈的 養年制 주장을 비난하고, 남인의 복제 주장에 동조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명·청 교체기의 중국 연호 사용에서도, 명나라 崇禎 연호 사용을 주장하는 송시열에 대하여 청나라 康熙 연호를 쓰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들을 송환하는 처리 안을 놓고 중앙 조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6월 23일에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끝내 북경으로 압송하는 것으로 의논이 정해졌다.<sup>56)</sup> 그리하여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들을 감독하여 호송하는 관리[押來官]로 무관의 낭청[武郎廳]인 崔元泰를 천거하였다.<sup>57)</sup>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들을 北京으로 압송한다는 소식을 들은 領議政 洪命夏가 6월 27일에 비밀리 상소<sup>58)</sup> 하였다. 이 상소문의 대강을 추려 줄인 것에는 '제주에 표류한 사람들을 장차 서울에 있는 관아의 벼슬아치를 보내어 감독하여 호송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감독하여 호송해 온 뒤에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단지 우리나라의 기밀한 일은 전부터도 그 비밀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니 비록 뒷날 누설될 걱정이 없진 않습니다. 이미 문서에 나타난 것이 없으면 나라에 화를 끼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현종은 안에 영의정 홍명하의 상소를 머물려 두고 회답하지 않았다.<sup>59)</sup>

뿐만 아니라 홍명하가 상소한 다음날인 곧, 6월 28일에 前正言 權格이 상소하였다. 이 상소문의 대략으로는 '중국 배가 제주에 표류해 왔는데 조정에서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을 장차 청나라에 압송할 것이라 합니다. 명나라의 후예들이 천자의 업을 보존하였고 임인관 일행은 이것을 매우 자세히 전하였습니다. 중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일개 使者를 보내어 명나라의 관리들에게 빨리 알려 마치 高麗가 송나라 말엽에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나라 사람들을 원수처럼 보아 굶주린 호랑이 입에 던져 넣어 기꺼이 천하 후세에 죄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은 삼가 통탄스럽습니다' 라 하였다. 현종은 안에 前正言 權格의 상소를 머물려 두고 회답하지 않았다.<sup>60)</sup>

권격이 상소한 보름 후인 7월 10일에 幼學 成至善 등 8인이 상소<sup>61)</sup> 하였다. 이 상소문에는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의논은 장차 청나라로 압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은 북건성에서 왔으며

56) 『顯宗實錄』 14卷, 8年 6月 丙申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丙申條.

57) 『備邊司曆錄』 顯宗 8年(1667) 6月 24日條.

58) 洪命夏는 현종 6년(1665)에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효종을 도와 北伐 계획을 적극 추진하였다.

59) 『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庚子條.

60) 『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6月 辛丑條.

61) 幼學 成至善 바로 成渾의 玄孫이었다. 『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7月 壬子條.

永曆君王이 남쪽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朱氏의 자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나라가 이미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망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잘 보살피 주고 몰래 배편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 불편할 경우에는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하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단하시되 조금도 의심하여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담당관에게 명하시어 배를 장만하고 양식을 넉넉하게 준 다음 그로 하여금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국경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나라에 보고해 아뢰기를 “지난날 신하로서 섬기던 의리를 생각함에 참으로 차마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을 잡아 보낼 수 없다. 죄벌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감히 못하겠다”고 하소서<sup>62)</sup>라고 하였다. 현종은 안에 幼學 成至善 등 8인이 상소를 물러 두고 재가[啓下]를 하지 않았다.<sup>63)</sup>

그러다가 현종은 유학 성지선 등 8인의 상소한 3일 후 7월 13일에 영의정이 출사하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에 대한 일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현종은 “제주에서 장계가 올라온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미 누설되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즈음에 저절로 퍼져 나갈 것이기에 속히 의논해 정하느니만 못하다. 청나라로 압송하는 것은 실로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이보다 나은 계책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兵曹判書 金佐明은 “일이 이미 이 지경이 되어 처리하기가 몹시 어렵다”<sup>64)</sup>고 말하였다. 형조 판서 이경억은 “이는 아주 중대한 일인데 대신들의 논의가 서로 크게 다르기에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좌명은 “애초에 번거롭게 치보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었으면 그만이었는데 벌써 누설된 뒤이어서 선처할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자 현종이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金萬基<sup>65)</sup>는 대정현감인 안숙을 소환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현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66)</sup>

62) 趙根, 「代成至善等 請勿執送 漂海漢人疏」 『損菴集』(奎6326).

63) 『顯宗實錄』 14卷, 8年 7月 壬子條.

64) 金佐明은 영의정 堉의 아들이다.

65) 金萬基는 宋時烈的 문인으로서 西人에 속한다. 효종 10년(1659)에 효종이 죽자, 慈懿大妃의 복상문제 때 尹善道를 공격하였다.

66) 7월 13일에 현종과 병조 판서 김좌명·형조 판서 이경억 등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의 처리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史臣이 논하였다. “지금 조정의 의논이

7월 14일에 병조 판서 김좌명·형조 판서 이경억이 面對를 청하자 현종은 인견하였다. 현종은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았는가”라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경억이 “청나라로 압송하는 것은 차마 못할 바입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러 聖上의 계책은 정해졌다”라고 대답하였다. 홍명하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기엔 성상의 계책은 이미 정해졌다. 끝내 나의 견해를 고집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7월 15일에 玉堂의 官員인 李有相·南二星·李端夏·朴世堂 등이 임금께 뵈기를 청하였다. 이에 현종은 인견하였다. 이유상은 “표류해 온 사람들이 과연 명나라 상인이라면 의리상 차마 잡아 보낼 수 없으니, 우선 표류해 온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에 머물러 있게 하고서 청나라의 조사가 있을 경우 ‘중국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고에 대처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박세당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겼으므로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을 차마 잡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정치화는 “박세당 등의 말은 몹시 사정에 어둡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뒷날 나랏일을 맡게 될 경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현종은 “만약 제주에 머물러 두었다가 남만인(南蠻人:헨드릭 하멜 등 8명-필자주)들처럼 도망이라도 가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잡아 보내자고 하고 잡아 보내지 말자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오직 내가 참작하여 정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였다.<sup>67)</sup>

현종이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의 처리 문제를 결정한 12일 후 7월 27일에 童蒙敎官 李商翼이 상소<sup>68)</sup>하였다. 이 상소문에는, ‘지금 신에게 직함 하나를 주어 제주로 달려가서 압송해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어찌 별도로 잘 처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신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놓쳐버렸다고 청나라에 보고하면 신에게만 죄가 내릴 것입니다. 때문에 나라에까지 화가 미칠 리는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의 아버지 李屹이 지난 인조 7년(1629)에 중국에 갔다가 불행히 북경에 있는 외국 사신이 묵던 집[玉河館]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의 시체를 넣은 상자가 돌아올 때 특별히 황제의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여러 갈래여서 서로 다투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니, 조짐이 좋지 않다. 김만기와 민유중의 무리가 비록 淸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나, 사심을 품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과격한 의논을 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顯宗實錄』 14권, 8년 7월 乙卯條·『顯宗修改實錄』 17권, 8년 7월 甲寅條.

67) 『顯宗實錄』 14卷, 8年 7月 丁巳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7月 丁巳條.

68) 『顯宗實錄』 14卷, 8年 7月 己巳條·『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7月 己巳條.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처럼 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종은 안에 동몽교관 이상의 상소를 머물려 두고 회답하지 않았다.

7월 29일에 前 副率 李之濂이 상소<sup>69)</sup>하였다. 그 상소문에는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만 리 바깥의 사정을 말해 주어서 神宗皇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류해 온 사람들 잡아 보내는 것이 의리에 해가 되고 인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냈다. 현종은 안에 전 부술 이지럼 상소를 머물려 두고 답하지 않았다.<sup>70)</sup>

현종 8년(1667) 당시의 제주목사 李堦는 執政 洪命夏에게 8월 4일 서간을 보내 北京으로의 송환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집정 홍명하는 答書에서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는 국가의 재앙을 내리는 조짐이니 어찌할 것인가?'<sup>71)</sup>라고 반대하였다. 결국 조정의 논의는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들을 송환시키기로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들은 9월 4일에 濟州를 떠났다. 그리하여 압송해 갈 비국의 낭관은 떠나갈 때 대신들의 분부를 듣도록 하라고 현종이 말하였다.<sup>72)</sup>

앞서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에 대해 중앙 조정에서 송환 처리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임인관 일행 표도인의 송환 처리안

처리안	청나라로의 압송	표도인들의 의사 존중
계열 인물	우의정 정치화, 형조판서 이경익, 지사 유혁연, 판윤 오정일, 호조판서 김수홍, 영의정 홍명하, 병조판서 김좌명 <비송시열계열> · <서인의 비주류로 표현된 계열>	승지 민유중, 유학 성지선 등 8명, 옥당의 관원 이유상 · 남이성 · 이단하 · 박세당, 동몽교관 이상익, 전 부술 이지럼, 전 정언 권격 <송시열 · 송준길 계열> · <서인의 주류로 표현된 계열>
현실대응 방식	현실론자 · 실리주의자	이상론자 · 원칙주의자

자료 : 『顯宗實錄』·『顯宗修改實錄』.

<표 4> 임인관 일행 표도인의 송환 처리안을 분류하면, 표도인들을 청나라로 압

69) 李之濂은 金集의 문인이다.

70) 『顯宗實錄』 14卷, 8年 7月 辛未條.

71) 洪相答書曰 今之主此論者 以胎禍國家爲言奈何云云. 「漂人問答」 八月初四日, 『丁未傳信錄』.

72) 『顯宗實錄』 14卷, 8年 7月 丙辰條 · 『顯宗修改實錄』 17卷, 8年 7月 丙辰條.

송하라는 주장하는 계열의 대응 방식은 현실론이며 실리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표도인들 스스로 가고자 하는 대로 주장하는 계열의 대응 방식은 이상론이며 원칙주의 입장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종 8년(1667) 이전에 청나라에서는 종래 전체 중국이 평정되었음을 조선왕조에 주지시켜 왔다. 하지만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임인관 등 제주에 표류해 온 사건으로 명나라의 남은 정권이 사실상 南中國에 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청나라에서는 조선왕조에 대한 海防을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에서 燕行 使臣들의 국내 사정에 관한 탐지를 엄격히 통제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연행 사신은 임인관 등 제주에 표류해 온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의 사정을 탐지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에서도 효종의 北伐 政策이 약화된 후 임인관 등 제주에 표류해 온 사건을 계기로 수그러졌던 恢復派와 主和派 사이에 紛爭은 일어나게 되었다.<sup>73)</sup> 하지만 현종 8년(1667) 당시에는 주화파가 세력을 얻고 있었던 때이기에 임인관 일행 표도인의 송환 처리를 청나라로 압송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회복파는 이후 西人과 老論계에 영향을 주어 大明을 정통으로 삼아 淸을 오랑캐로 보는 정통논의가 부단히 뒤를 잇고 있다.

요컨대 1644년에 明나라가 망하자, 조선왕조에서는 임진왜란 때 구원군을 파견하여 '再造之恩'을 입은 명나라에 대해 의리를 지켜한다는 것이 바로 大明義理論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明나라 남은 정권이 南遷하여 弘光(1645년)·隆武(1645년)·永曆(1647년~1662년) 皇帝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다가 1662년 완전히 끊어지자 대명의리론은 강화되었다. 대명의리론의 이론적 틀은 尊周論이었다. 존주론은 천하가 무수한 국토의 작은 나라로 분립하여 쟁투하던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 시대에 천명을 받들어 정통성을 보유한 주나라만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란한 세상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존주론의 논리이다. 조선후기 사상사에 있어서 존주론은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인 동시에 무너진 동아문화 질서를 정신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에

73) 효종 연간(1649~1659)에 宋時烈·宋浚吉은 주로 言官職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효종 9년(1658) 경에 송시열·송준길을 중심으로 한 계열은 효종이 절대적인 신임 하에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에 현종 대(1659~1674)의 송시열·송준길을 중심의 정치세력은 禮訟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국은 서인·남인의 갈등보다도 송시열·송준길을 중심의 주류와 비송시열 계열인 金佐明·徐必遠 등 비주류의 갈등의 주가 되는 형세였다. 정재훈, 1994, 『17세기 후반 노론학자의 사상-송시열·김수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3호, 한국역사연구회, 53~54쪽.

희생된 전사자나 충신·열사는 그러한 체제 수호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밝게 나타내는 작업이 존주론의 실천과 병행되었다.<sup>74)</sup>

한편, 9월 29일에 비변사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을 護送해 오는 관원이 衿川에 당도했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을 서울 안으로 데려 오지 않고 금천에서 곧바로 황해도·평안도로 들여 보내도록 하였다. 특히 현종은 弘濟站을 지날 갈 때에 禮曹로 하여금 제주에 표류한 명나라 상인들에게 밥과 옷을 주도록 하였다.<sup>75)</sup> 10월 2일에 右議政 정치화가 면대를 청하였다. 이에 현종은 그를 인견 하였다. 정치화에게 현종은 “표류해 온 중국인이 이미 도착하였는가” 라고 물었다. 정치화가 “이미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인들은 홍제원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북경으로 들여보낼 것을 듣고는 모두 죽어도 가지 않으려고 하며 심지어 목매어 죽으려고 하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會勝이라고 하는 자만은 조금도 마음의 동요 없이 태연자약하였다” 라고 아뢰었다. 더구나 정치화는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인들에게 역관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를 것이다.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전례가 있다. 그에 의거해서 처리하여야 할 형세이다” 라고 말하였다. 현종은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인들을 죄인과 마찬가지로 차꼬를 채워서 들여보낼 형세” 라고 말하였다. 또 정치화는 “표류해 온 중국인들을 압송하는 일은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아무나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는 것이다. 표류해 온 중국인들이 올라올 때 긴 글을 주거나 시구를 써서 준 자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표류해 온 중국인들이 침범하는 말을 한 것도 있었다. 표류해 온 중국인들이 짐 꾸러미를 수색하여 가지고 있는 글을 모두 찾아낸 다음에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 아뢰었다. 현종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sup>76)</sup>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 임인관 일행을 청나라로 압송하였다. 이에 앞서 표류해 온 명나라 상인 임인관 등이 전하에게 사정을 아뢰었다. 그 사정의 아뢴 글의 대략에는,

“표류해 온 이래로 임금의 은덕을 내려 주시어 극진히 주선해 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난관을 넘게 지냈지만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시름에 겨워

74) 정옥자, 1998,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의 정리」 『조선후기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05쪽.

75) 『備邊司謄錄』 顯宗 8年 9月 29日條.

76) 『顯宗實錄』 14卷, 8年 10月 癸酉條·『顯宗修改實錄』 18卷, 8年 10月 癸酉條.

거의 숨이 끊어져가고 처·자식은 슬피 울부짖으며 반드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고향 생각에 아침·저녁으로 울부짖음을 그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후덕을 베푸시고 명나라와 대대로 친하게 지내었던 것을 생각하여 하찮은 저희들에게도 이를 내려 주소서. 그러면 인관 등의 목숨이야 어찌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만, 전하의 높은 의리는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일본으로 칙사를 보내어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거나, 혹 저희들을 붙잡아 여기시어 특별히 배 한 척을 내주어 저희들이 직접 몰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면 그 은혜가 가이 없을 것으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떠받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國君과 藩王 또한 어찌 감히 뒷날 잘 대우해 준 데 대한 보답을 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중앙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통보하여 다시는 변통할 뜻이 없다.”<sup>77)</sup>

라고 사정을 아뢰었다. 이와 같이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등이 현종에게 사정을 아뢰었지만 중앙 조정에서는 “청나라 조정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임인관 등이 모두 울부짖으며 죽어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더구나 임인관 일행을 내몰아 압송해 갔다. 도로에 잇닿은 곳에서 보는 자들이 모두 비분강개하였다.”<sup>78)</sup> 또,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말하는 자도 있었다.”<sup>79)</sup>

## 2. 中國人의 漂到 處理

인조 14년(1636) 12월부터 효종 10년(1659)까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압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청나라는 조선에 표도한 명나라 백성들의 선박을 돌려 보내는 여부가 중심이 되곤 했다. 반면에 조선왕조는 이 나라에 표도한 명나라 백성들의 송환 처리와 명나라에 대한 義理를 중시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종 3년(1652) 2월 초9일에 중국 상인이 탔던 배가 정의현 내각개[川尾浦]에 표류해 도착했다. 旌義縣監 李卓男은 중국 상인이 표류해 도착한 곳으로 가서 살펴보니 28인이 모두 식발하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옆에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중국 상인 28인에게 온 곳을 물어 보았다. 그들은 모두 南

77) 『顯宗實錄』 14卷, 8年 10月 甲戌條 · 『顯宗修改實錄』 18卷, 8年 10月 甲戌條

78) 『顯宗實錄』 14卷, 8年 10月 甲戌條 · 『顯宗修改實錄』 18卷, 8年 10月 甲戌條

79) 『顯宗實錄』 14卷, 8年 10月 甲戌條

京 蘇州 백성들로서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가 이제 막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태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부서졌다. 그 결과 1백 85인이 빠져 죽고 다행히 살아남은 자는 겨우 28인이다. 또 침몰된 재화가 엄청나게 많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의현감 이탁남은 해엄을 잘 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10분의 1이나마 재화를 채취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여우·수달·표범·쥐 등의 가죽과 인삼·구리와 쇠·꿀 기름·명주 비단·의상·장막·칼과 검·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등이 각각 수천 수백이나 되었다.

중국 상인 28인 가운데서 苗珍寶라는 자가 꽤 문자를 해득하였다. 묘진보가 이어 스스로 사실을 진술한 말[供辭]을 써서 아뢰었다. 이에 의하면, “小商 등은 南京 蘇州府 吳縣 사람들로서 홍광 원년(1645)에 聖旨를 받들고 바다를 건너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 李自成의 난을 갑자기 당하였다. 小商 등은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交趾<sup>80)</sup>에서 轉役하여 行商을 업으로 삼은 지 이제 7년(1652)이 되었다. 가만히 들으니, 청나라 조정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다 하기에 本土에 돌아가려고 1월 22일 일본에서 배를 띄워 2월 9일에 귀국의 지방에 이르렀다.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같이 왔던 2백 13인 가운데 1백 85인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28인이다. 만약 北京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길이 더욱 멀어 2·3년은 걸려야 본토에 도착할 것이다. 생명을 온전히 하여 도착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 여기서 일본까지는 겨우 며칠 거리밖에 안 되고 일본에서 南京까지도 수개월 거리이다. 부모와 처자를 다시 서로 만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이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이다”라 하면서 정의현감 이탁남에게 간청하였다.<sup>81)</sup>

정의현감 이탁남은 스스로 직접 중국 상인 28인이 표류해 온 내각개에서 보고 확인한 사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표류한 사실에 대해 진술 받은 것을 첨부하여 濟州牧使 李元鑣에게 보고<sup>82)</sup>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이원진 제주목사는 중앙 조정에 장계를 치게 하였다. 이원진 제주목사의 장계를 접한 효종은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3월 30일에 領議政 鄭太和가 “표류해 온 漢人是 전례에 따라 그 재물도 실어서 북경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효종께 아

80) 交趾는 중국 漢나라 때에, 지금의 베트남 북부 톤킨, 하노이 지방에 둔 행정 구역이다. 前漢의 武帝가 南越을 멸망시키고 설치하였다.

81) 『孝宗實錄』 8권, 3년 3월 辛丑條.

82) 李元鑣은 인조 8년(1630)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三司를 거쳐 東萊府使가 되었다. 이원진은 효종 4년(1653)에 濟州牧使로 부임해 와서 하멜 등 표착한 30여 명의 네덜란드인들을 서울로 압송했을 뿐만 아니라 『耽羅志』를 편찬하였다.

되었다<sup>83)</sup> 효종은 “전일 우리나라에서 잡아 보낸 자들이 모두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음을 당하였다. 내 또 차마 박절하게 죽을 곳으로 보내지는 못하겠다.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고 말하였다.<sup>84)</sup> 이에 중앙 조정에서는 정태화의 의논을 따라 제주에 표류해 온 漢人들을 北京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 효종 3년(1652)에는 청나라가 조선왕조에 표착하는 漢人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압박을 가하였기에 북경으로 보내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副校理 閔鼎重은 효종 3년(1652) 6월 14일에 上疏 하였다. 이 상소문에는 ‘바다에 표류한 중국인은 어찌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명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표류한 중국인들을 포박하여 거리낌 없이 원수에게 몰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주는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이므로 피차의 소식이 누설되지 않을 만큼 비밀스런 곳입니다. 지금 배를 마련하여 보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맡겨 둔다면 뜻밖에 발생할지도 모를 환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주에 있게 하고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봉급을 약간 지급하여 죽지 않게 해주어 여생을 마치게 한다면 은혜와 의리를 펼 수 있고 조처하기도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효종은 “耽羅로 표류해 온 명나라 백성들을 비록 그대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나 역시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지금 또 탐라에 표류해 온 명나라 백성들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몰아 보내다니 내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또 효종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청나라 사람들의 횡책을 받을 것이다. 당초에 곧바로 보내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다음부터는 비변사에 말하여 변방 신하에게 분부하기를 ‘혹시라도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에게 번거롭게 보고할 것 없이 바로 비변사에 알려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만일 타고 있는 배가 견고하여 실을 만하다면 그곳에서 잘 보호하여 보내도록 하고 배가 부서진 경우에도 즉시 치게하여 조정의 일을 감당하여 처리함을 기다리고 시끄럽게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sup>85)</sup>’”고 말하였다. 요컨대 효종 3년(1652)에 영의정 정태화와 부교리 민정중은 효종의 앞에서 표류한 명나라 백성들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의정 정태

83) 鄭太和는 효종 1년(1650)에 中樞府 判事가 되어 좌의정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이듬해 재차 영의정이 되었다.

84) 『孝宗實錄』 8卷, 3年 3月 辛丑條.

85) 『孝宗實錄』 8권, 3年 4月 丁卯條.

화는 표류한 명나라 백성들을 청나라로 압송하라고 주장한 현실론자·실리주의자였다. 반면에 부교리 민정중은 표류한 명나라 백성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하게 주장한 원칙주의자·이상론자였다. 이에 효종은 청나라가 의심을 일으킬 단서가 될까하여 제주에 표도한 漢人들을 황해도로 유인해 와서 청나라 사신의 행차에 묶어 보냈다.<sup>86)</sup>

그 후 효종 8년(1657) 당시에 宋浚吉<sup>87)</sup>·宋時烈<sup>88)</sup> 등은 평소부터 명나라에 대해 尊周의 의리를 지닌 까닭에 모든 상소하는 글에 淸國의 年號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로 벼슬에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教旨에도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도록 요청을 하였다. 송준길·송시열 등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선왕조가 再造之恩을 입은 명나라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종 8년(1657) 8월 16일에 贊善 송시열은 우리 조정과 명나라의 사이에 보다 망극한 은혜를 입기로는 큰 것이 없었다. 때문에 찬선 송시열은 중국의 남녘 외진 곳에 있는 명나라에 우리 조정의 정성을 군인·백성·문신·무신 중에서 충성심과 신의가 깊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도록 요청<sup>89)</sup>하는 건의를 辭職 上疏하였다.

또한, 효종 8년(1657) 10월 25일 송준길의 筭子에,

삼가 듣건대, 황실의 자손이 아직 廣東과 福建 사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天下의 大統을 완전히 魏賊에게 도적 맞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86) 『孝宗實錄』 8卷, 3年 6月 甲寅條.

87) 宋浚吉은 李珥·金長生의 문인이다. 효종 즉위년(1649)에 執義로 재기용되었다. 宋時烈 등과 함께 北伐計畫에 참여하였다가, 金自點이 淸나라에 밀고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뒤에 大司憲을 지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송시열과 함께 西人에 속하여 분열된 서인 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쓰는 한편,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제기되었을 때 南人의 주장을 물리치고 養年制(만 1년)를 관철하였다.

88) 宋時烈은 효종 즉위년(1649)에 효종이 보위에 오르자 掌令에 등용, 世子侍講院 進善을 거쳐 執義가 되었으나 당시 집권당인 西人의 淸西派에 속한 그는 功西派의 金自點이 영의정이 되자 사직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이듬해 김자점이 파직된 뒤 진선에 재임명되었으나 효종 2년(1651)에 그가 찬술한 『長陵誌文』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청의 압력을 받아 사직하고 또 낙향. 忠州牧師·집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후진 양성에 전심하였다. 효종 9년(1658)에 찬선에 등용, 이조판서로 승진,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효종이 죽자 그 계획은 중지되었다.

89) 『孝宗實錄』 19卷, 8年 8月 丙戌條.

나라는 까마득히 전해 듣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중략… 신이 듣건대, 제주 한 섬은 남쪽 바다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해외의 여러 나라를 왕래 하며 장사를 하는 모든 중국 배들이 대부분 제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해안에 정박하며 며칠씩 머무는 경우도 비밀비제한대 그곳을 지키는 신하가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때마다 그들을 놓아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제주는 또 바다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 번거롭게 남들이 보고 듣지 않게 하고서 일의 기미를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주와 성의가 모두 지극하고 충성과 신의를 의지할 만한 임금께 늘 따라다니는 신하 한 사람을 골라서 濟州牧使에 除授해서 그로 하여금 주선하여 경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디 하건 빨리 하건 한계를 두지 말고 요령껏 명나라 황실의 후손과 만날 수 있는 수로를 통하게 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이어 사신을 보낸다면 우리 조정의 군신 상하가 몇 십 년 동안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워하던 誠意를 혹 하루아침에 중국 조정에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뱃길을 통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혹 뜻대로 되지 않아 청나라 지방으로 표류해 달게 되면 청나라의 의심과 힐난을 불러 일으켜 무사한 가운데 화를 복돋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제주 목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략… 중국 조정에 문안을 통하는 편지 같은 것은 또한 제주 목사의 문자를 사용하되 단지 '조정의 명을 받들어 먼저 통로를 개척한다'는 뜻을 보이곤 은밀히 잘 간직하도록 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누설하지 말도록 합니다.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바다에 표류하는 行商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기타 行人을 뽑는 일과 그들이 중국에 가서 임기응변으로 중국의 사정을 탐지해 오는 등의 일은 모두 제주 목사가 혼자 생각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지금 듣건대, 제주 목사[具義俊 제주목사<sup>90</sup>-필자주]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 목사를 다시 선발하는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에 은밀히 지휘를 내리시면 더욱 흔적이 없을 듯합니다. 오직 임금께서 신하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익숙히 생각하시어 재단해 처리하소서.<sup>91</sup>

라고 상소하였다. 송준길은 명나라 황실 후손들이 제주에서 풍랑을 만나 해안에 정박하기에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 조정의 성의를 베풀면 중국 조정에 알릴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 특히 송준길은 제주목사가 行人을 뽑아 중국

90) 具義俊 제주목사는 효종 6년(1655) 9월에 도입하여 효종 9년(1658) 4월에 체임되었다.

91) 『孝宗實錄』 19卷, 8年 10月 甲午條·宋俊吉, 『同春堂集』 卷二「貼黃劄」.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之一「濟州-邊情」條.

孝廟朝 宋同春俊吉 請擇文武全材 忠義可仗之人 委任濟州 探問江南水路 復伸北拱之誠.

의 사정을 탐지해 오게 하는 것이 대명의리론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었다.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종 8년(1667) 임인관 일행에 대한 송환 처리한 후로부터는 표도인을 송환할 때에 중국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현종 11년 제주 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종 11년(1670) 5월 25일 밤에 다른 나라 배 1척이 정의현 지경 근등개[末等浦]의 바닷가 일대에 도착하여 배가 파손되었다. 이 근등개에 표류한 중국인 沈三·郭十·蔡龍·楊仁 등 머리를 깎은 자는 22명과 머리를 깎지 않은 자가 43명이었다. 이 표류한 중국인은 중국 옷을 입거나 혹은 오랑캐 옷과 예인 옷을 입고 있었다. 표류한 중국인 스스로가 본래 명나라 廣東·福建·浙江 등지의 사람들이었다. 청나라가 南京을 차지한 뒤에 廣東 등 여러省去 청나라에 복속되었으므로 바다 밖 香港[香山島]에 도망 나와 장사하면서 살아왔다. 5월 1일에 向山도에서 배를 출발시켜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해 가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되어 이곳에 도착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표류한 중국인은 나가사키로 가기를 원하였기에 제주 목사 盧銳<sup>93)</sup>은 배에 짐을 실러 돌려보내었다.<sup>94)</sup> 이와 같은 내용을 제주 목사 노정은 중앙 조정에 비밀히 장계로 치게하였다.<sup>95)</sup> 요컨대 현종 11년(1670)에 표류한 중국인들이 스스로 가기를 원하는 곳인 일본의 나가사키로 노정 제주 목사가 한 척의 배를 사들여 돌려보내었다.<sup>96)</sup>

더구나 숙종 1년(1675)에 李選<sup>97)</sup>이 巡撫使로 제주에 온 바가 있었다. 중앙 조정에서는 이선 순무사에게 중국배로서 표류하여 도착한 것은 육지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게다가 제주목사는 중국배로서 표류하여 도착한 것을 狀啓로 알리지 말라는 뜻을 제주 삼읍의 수령에게 비밀히 유시하여 준행하는 근

92) 제주목사 盧銳은 효종 4년(1653) 여름에 헨드릭 하멜 등이 대정현 지방 차귀진하 대야물 연변에 파선하여 표착하였을 때에 濟州判官이었다. 노정 제주판관은 헨드릭 하멜이 표착한 곳으로 제주 목사 이원진의 명을 받아 대정현감 권국중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조난 상황을 조사하고 問情하였다. 그리하여 노정 제주판관은 헨드릭 하멜 등을 제주읍성으로 호송해 온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16년 후에 노정은 현종 10년(1669) 7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현종 13년(1672) 5월에 체임되었다.

93) 『顯宗實錄』 18卷, 11年 7月 乙丑條·『顯宗修改實錄』 22卷, 11年 7月 丙寅條.

94) 현종 11년(1670)에 정의현 지경인 근등개의 바닷가 일대에 중국인 심삼·곽십·채룡·양인 등이 표도 했을 때에 제주목사는 盧銳, 판관은 尹弼殷, 정의현감은 李宋老였다. 李益泰, 『知瀛錄』.

95) 買給一船 依其願送還日本. 李益泰, 『知瀛錄』.

96) 李選은 宋時烈的 문하생이다. 숙종 1년(1675)에 형조참의로 있던 중 송시열이 쫓겨나고 南人이 득세하자 사직하였다가 숙종 6년(1680)에 庚申換局으로 西人이 집권하자 함경도 관찰사로 등용, 3년 뒤 경기도로 전임하였다.

거로 삼았다.<sup>97)</sup> 이를테면 현종 11년(1670)에는 표류한 중국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숙종 1년(1675)에는 중국배로서 제주에 표류하여 도착한 것은 제주에서 육지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와 같은 조처는 현종 8년(1667) 임인관 일행에 대한 송환 처리한 후에 생겼음을 알 수가 있다.

숙종 19년(1693) 12월 초10일에 江南 江寧府 사람 程乾順 등 32인의 배가 明月 鎮 동쪽인 歸德里 연변에 부서졌다. 이 정건순 등 32인은 '제주에서 배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渡航 許可 證明書가 없이 바다로 나가면, 곳곳에서 자세히 캐물어 조사하여 구속됨을 면하기가 어렵다. 만약 도항허가증명서를 제주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 운운했다. 이에 제주목사 尹鼎 和는 정건순 등 32인 등이 말한 내용을 중앙 조정에게 장계를 치게했다. 중앙 조정에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주에는 정건순 등 32인 표류인에게 여러 달에 음식을 드리는 그 형세가 몹시 딱하고 어려웠다. 정건순 등 32인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잠시 관계를 가졌다. 중앙 조정에서는 '정건순 등 32인 등 요구하는 바의 도항 허가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주어 즉시 배가 떠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회답한 지시가 내려 졌다.<sup>98)</sup> 요컨대 숙종 19년(1693)에 제주에서는 정건순 등 32인 표류인들에게 여러 달에 음식을 공궤하는 형세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앙 조정에서는 표류한 청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항 허가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서 즉시 배가 떠날 수 있게 했다.<sup>99)</sup>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대정현 예래리 개각 일대에 표도 했던 95명은 본래 명나라 복건성 지방 주민이었으며 일본에 장사하러 가는 길이었다. 명나라 복건성 관가의 상인인 임인관 일행은 배에다 흰 빛깔의 사탕·사슴 가죽·약재로 쓰는 다목의 속살·품질이 좋은 비단·약재 등의 물품을 싣고 있었다. 제주

97) 『肅宗實錄』 13卷, 8年 6月 乙未條.

98) 李益泰, 『知瀛錄』 「江南漂清人記」·『備邊司啓錄』 肅宗 20年(1694) 4月 18日條.

99) 李益泰, 『知瀛錄』(영인본), 205~214쪽.

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직분은 官商·財富·官船官·家丁·總管·夥長·船工·木梢 등 다양하였다. 더구나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성씨로는 林氏·陳氏·鄭氏·曾氏·蔡氏·郭氏·吳氏·揚氏·張氏 등이 있었다.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본적은 대다수가 천주부와 동안현·진강현·남안현, 장주부와 장태현 사람이었다.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일행의 배에 남아 있는 물품으로는 사슴 가죽·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비단·약재·콩과에 속하는 다진 초·밥술·도끼·쇠들줄·칼·옛 환도·조총·홍이포 등이었다.

둘째로, 효종 3년(1652) 2월 초9일과 현종 8년(1667) 5월 23일에 중국인들이 제주 삼읍에 표도 해 온 선박은 명나라의 선박으로 2건에 2척이었다. 표도해 온 중국 사람은 명나라의 선박에 명나라 사람이 123명이었다. 제주에 표도된 사유는 大風과 颶風에 의한 것이었다. 표도한 선박이 정박한 곳은 정의현 내의 내각개와 대정현 내의 예래리 개각 일대였다. 명나라의 선박은 私船·官船으로 장사를 위해서 출항했을 뿐만 아니라 실려 있던 물건은 여우 가죽·인삼·잣·명주실로 짠 피륙·비단·흰 빛깔의 사탕·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약재 등이었다.

셋째로, 6월 21일에 전라 감사 홍처후가 중앙 조정에 치계한 후에 6월 23일에는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송환 처리하는 의견은 중앙 조정에서 상반되었다. 송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청나라로 송환과 표도인 의사 반영을 고려하는 양론이었다. 이 논의 자체가 커다란 변화로 보여졌다.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청나라로 송환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 정치화·지사 유혁연·형조 판서 이경억·판윤 오정일·영의정 홍명하·병조 판서 김좌명 등이었다. 이들은 비송시열 계열, 곧 西人의 비주류로 표현된 계열이었다. 현종 8년(1667) 당시에는 主和派가 세력을 얻고 있었던 때이었다. 그리하여 임인관 등 95명 표도인의 송환 처리를 청나라로 압송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 주화파는 현실론자·실리주의자였다.

반면에 임인관 등 표도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승지 민유중·유학 성지선 등 8명, 옥당의 관원 이유상·남이성·이단하·박세당, 동몽교관 이상익, 전 부술 이지렴, 전 정언 권격 등이었다. 특히 이들은 김상헌·송시열 계열 곧, 西人의 주류로 표현된 계열이었다. 이 恢復派는 서인과 老論계에 영향을 주어 大明을 정통으로 삼아 淸을 오랑캐로 보는 정통 논의인 大明義理論을 형성 주창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임인관 등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의리상 잡아 보

낼 수 없다'라는 요지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종에게 상소를 하였다. 하지만 현종은 표도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소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에 표류해 온 임인관 등 95명은 비송시열 계열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청나라로 송환 처리하는 의논이 정해졌다.

넷째로, 중국인의 표도에 대한 처리로는 효종 3년(1652) 2월 초 9일에 중국 상인 28 인이 정의현에 표류해 온 것을 송환했다. 중국 상인 28 인을 북경으로 보낼 경우에 2·3년은 걸려서 本土에 도착하는 데에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 상인 28인을 북경에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내었다. 효종 3년(1652) 6월 14일에 효종은 변방 신하들이 외국인의 표도 할 경우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에게 번거롭게 보고할 것 없이 비변사에 알려 비변사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타고 있는 배가 견고하여 실을 만하면 그곳에서 잘 보호하여 보내도록 하고 배가 부서진 경우에도 즉시 치게 하여 중앙 조정에서 일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소문이 나지 않게 했다. 효종 8년(1657)에 송준길·송시열 등은 평소부터 명나라에 대해 尊周의 의리를 지닌 까닭에 모든 상소하는 글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후로 벼슬에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교지에도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효종 8년(1657)에 송준길은 제주목사가 行人을 뽑아 중국의 사정을 탐지해 오도록 효종께 箭子를 올리기도 했다.

현종 8년(1667) 이후에 조선왕조에서 중국인의 표도 처리 과정은 앞선 시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바로 표도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종 11년(1670) 5월 25일에 다른 나라 배 1척이 정의현 지경 근등개의 바닷가 일대에 도착하여 배가 파손되었다. 표류한 중국인 심삼·곽십·채룡·양인 등은 나가사끼로 가기를 원하였기에 제주 목사 노정은 배를 채비시켜 돌려보내었다. 숙종 1년(1675)에 이선 순무사에게 중국배로서 표류하여 도착한 것은 육지에 올라오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는 중국배로서 표류하여 도착한 것을 중앙 조정에 장계로 알리지 않는 뜻을 비밀히 유지하였다. 숙종 19년(1693) 12월 초 10일에 강남 강녕부 사람 정건순 등 32인의 배가 명월진 동쪽인 귀덕리 바닷가 일대에 부서졌다. 정건순 등 32인은 제주에서 배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도항 허가 증명서가 없으면 구속되기에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중앙 조정에서는 제주에서 표류인에게 여러 달에 음식을 供饋하는 형세가 어려웠기에 표류한 청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항 허가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배가 떠나게 했다.

17世紀 中葉 中國人の 濟州 漂到

〈別표 1〉 林寅觀 一行의 職分과 姓名, 年歲 · 本籍의 目錄

	職分	姓名	年歲	原籍	備考
1	官商	林寅觀	44歲	泉州府人	官家の 商人
2	財富	陳得	24歲	泉州府人	物資를 補佐하는 사람
3	官船官	曾勝	27歲	泉州府人	배를 主管하는 관리
4	家丁	宋圭	18歲	泉州府人	집에서 부리는 남자 일꾼
5		易平	24歲	泉州府人	
6		方治	18歲	泉州府人	
7		迎宇	18歲	泉州府人	
8		崇德	18歲	泉州府人	
9		曾誠	28歲	泉州府人	
10	總管	林瑞	47歲	泉州府人	전체를 總括하는 벼슬
11	夥長	郭元	50歲	泉州府 同安縣人	?
12	船工	林二	45歲	泉州府 同安縣人	배를 만드는 木手
13	目梢	陳亥	22歲	泉州府 同安縣人	키를 보는 사람
14		王明	40歲	泉州府 同安縣人	
15		吳乞	24歲	泉州府 晉江縣人	
16		陳靖	22歲	泉州府人	
17		占怨	36歲	泉州府 晉江縣人	
18		呂妹	33歲	泉州府 晉江縣人	
19		癸丑	31歲	泉州府 晉江縣人	
20		陳五 <sup>1</sup>	32歲	泉州府 晉江縣人	
21		歐福	40歲	泉州府 同安縣人	
22		林聘	45歲	泉州府 晉江縣人	
23		文發	30歲	泉州府 晉江縣人	
24		林五	32歲	泉州府 晉江縣人	
25		高丑	34歲	泉州府 晉江縣人	
26		陳暢	40歲	泉州府人	
27		郭生	36歲	泉州府人	
28		蔡妹	30歲	泉州府 南安縣人	
29		三仔	20歲	泉州府人	
30		林顯	25歲	泉州府人	
31		陳生	24歲	泉州府人	
32		林靖	32歲	泉州府 同安縣人	
33		林用	40歲	泉州府人	
34		林春	45歲	泉州府人	
35		林珠	28歲	泉州府人	
36		林主	30歲	泉州府人	
37		林啓	36歲	泉州府人	
38		蔡珠	30歲	泉州府人	
39		洪允	35歲	泉州府人	
40		張添	30歲	泉州府人	
41		陳勝	34歲	泉州府人	
42		林紬	30歲	泉州府人	
43		未仔	28歲	泉州府人	
44		林嶺	30歲	泉州府 同安縣人	
45		林冗	24歲	泉州府人	
46		陳辰	35歲	泉州府人	
47		陳展	28歲	泉州府人	

	職分	姓名	年歲	原籍	備考
48		林招	?	泉州府 同安縣人	
49		林茂	?	泉州府 同安縣人	
50		吳贊	?	泉州府 同安縣人	
51		陳然	34歲	泉州府 同安縣人	
52		陳好	34歲	泉州府人	
53		陳賤	27歲	泉州府人	
54		陳洒	22歲	泉州府人	
55		林完	25歲	泉州府人	
56		郭娘	28歲	泉州府人	
57		鄭四	37歲	漳州府人	
58		吳替	36歲	泉州府人	
59		勝姐	18歲	泉州府人	
60		尾貝	30歲	漳州府人	
61		蔡助	30歲	泉州府人	
62		蔡貴	30歲	泉州府人	
63		陳直	30歲	泉州府人	
64		潘暢	29歲	泉州府人	
65		曾四	44歲	泉州府人	
66		曾胤	35歲	泉州府人	
67		德仔	26歲	泉州府人	
68		林壽	30歲	泉州府人	
69		鄭喜	46歲	泉州府人	
70		陳五 <sup>2</sup>	29歲	泉州府人	
71		李七	40歲	漳州府人	
72		戴七	40歲	泉州府人	
73		林士	26歲	漳州府人	
74		陳夏	24歲	漳州府人	
75		陳甲	25歲	漳州府人	
76		鄭聘	25歲	漳州府人	
77		林替	32歲	漳州府人	
78		鄭應	25歲	漳州府人	
79		施玉	25歲	漳州府人	
80		林紬	28歲	漳州府人	
81		陳紗	26歲	漳州府人	
82		許暢	42歲	漳州府人	
83		池忠	31歲	漳州府人	
84		陳五 <sup>3</sup>	35歲	漳州府人	
85		引姐	30歲	漳州府人	
86		黃七	25歲	漳州府人	
87		湯寬	36歲	漳州府人	
88		楊長	35歲	漳州府人	
89		楊春	34歲	漳州府人	
90		陳良	27歲	漳州府人	
91		張道	32歲	漳州府 長泰縣人	
92		泉暢	?	漳州府 長泰縣人	
93		林贊	?	漳州府 長泰縣人	
94		林細	?	漳州府 長泰縣人	
95		林定	28歲	漳州府人	

자료 : 李益泰, 1997, 『知瀛錄』 「中國人漂流記」(제주문화원 영인본), 134~140쪽.  
 著者 未詳. 『丁未傳信錄』 「解送漂海人口咨文附計開」(1667年 10月 6日).

〈Abstract〉

The Arrival of Chinese at Jeju in the 17th Century  
-Focused on 95 Ming merchants drifted to the island in 1667-

Kang Chang Ryong

This study deals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government, both central and local, concerning Chinese who were drifted to its territory in the mid 17th century. The main discussion in the study is focused on a group of Ming merchants who accidentally landed on Jeju Island in 1667(the 8th year of the King Hyeonjong's rule), dealing with the details such as their job, name, age, birth place, the list of goods carried in their ship, measures of the Joseon government to send them back, and the gener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for handling the Chinese related matters.

It was on May 23 in 1667, the 8th year of the King Hyeonjong's rule, that a group of 95 Ming merchants lost their trade route to Japan and had to land at the coast of Gaekkak, Yerae-ri, Daejeong-hyeon of Jeju. The merchants, among them was a government-sponsored merchant named Lian yan guan from Fujian Province of Ming China, had trade goods in their ship such as white confections, deer hide, herbal medicines and good-quality silk. Most of these Ming merchants were found to have come from Quan zhou fu, tong An Xian, tin tiang xian, Nan an xian, zhang zhou fu and zhang tai xian.

Records show that the arrival of Ming merchants on May 23 in 1667 was preceded by other groups of foreigners who arrived, also accidentally, at Sameup of Jeju on February 9 in 1652(the 3rd year of the King Hyojong's rule). In total, two Ming ships brought 123 Chinese merchants.

The news of the 1667 incident was promptly delivered to the court on June 21 by Hong Cheo-hu, Governor of Jeolla-do, and a cabinet meeting was held two days later, on June 23, to decide how to deal with the Ming merchants. Views of the

government ministers were divided.

Members from the non-mainstream faction of Seoin( 'Party of the West' ), such as Jeong Chi-hwa(Chief Minister in the Right), Yu Hyeok-won(Provincial Governor), Yi Gyeong-eok(Justice Minister), O Jeong-il(Mayor of the Capital), Hong Myeong-ha(Prime Minister) and Kim Jwa-myeong(Military Minister), insisted that the merchants should be sent back to their home where Ching had toppled Ming. By contrast, members from the mainstream faction, including Min Yu-jung(Chief Royal ecretary), Seong Ji-seon, Yi Yu-sang, Nam I-seong, Yi Dan-ha, Bak Se-dang, Yi Sang-ik, Yi Ji-ryeom, Gwon Gyeok, had a view that they should be sent to where they wanted to go to. The opinion of the latter, that Joseon should respect Ming as the only authoritative dynasty of China and disregard Ching as a regime of "northern barbarians", succeeded in persuading the ruling faction, Noron(Elders' Discourse), of Seoin. Accordingly, a decision was made to send the 95 Ming merchants to China under the reign of the Ching Dynasty.

The 28 Chinese merchants who landed at Jeongui-hyeon of Jeju Island on February 9 in 1652 were also sent to Beijing, China. On June 14 of the same year, King Hyojong decided to simplify the existing report system and ordered that all foreigners drifted to his territory should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Bibyeonsa(Border Defense Council) without reporting to army or navy commanders. In 1657(the 8<sup>th</sup> year of the King Hyojong's rule), a group of influential statesmen, including Song Jun-gil and Song Si-yeol, argued that to maintain the traditional allegiance to "civilized China", all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ir government, including memorials sent up to the throne and royal edicts, should avoid using reign titles of Ching.

On May 25 in 1670(the 11<sup>th</sup> year of the King Hyeonjong's rule), another Chinese ship was drifted to Geutdeunggae of Jeongui-hyeon, Jeju Island. No Jeong, governor of Jeju, acceded to the request of the Chinese merchants by allowing them to sail back to Nagasaki, Japan. When yet another Chinese ship was drifted to the island in 1675(the 1<sup>st</sup> year of the King Sukjong's rule), the Jeju governor kept the ship from coming ashore. The governor didn't make an official report of the incident for the court, and gave admonition for his people to keep it in secret. On December 10

in 1693(the 19<sup>th</sup> year of the King Sukjong's rule), a Chinese ship carrying 32 Ching merchants, including cheng gan-shun from Jiangningfu in south China, was wrecked at a coast of Gwideok-ri, east of Myeongwoljin. The local government acceded to their request and issued a written certificate to ensure their safe passage in their return journey.

Key words : Ming merchants, drifting to Jeju, identification, goods, sending back, management of drifters, Pro-Ming Policy, utilitarianism